산학협력단 법인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·공유·확산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이 법인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. 혜전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 (업무)

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②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③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④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⑤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⑥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
⑦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⑧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⑨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대학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
⑩ 대학과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·기자재·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
⑪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⑫ 영유아교육 위탁운영사업
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
⑭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5조 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

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과의 협의와 업무조정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부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.

① 부설연구소 :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산하 센터

② 학교기업 :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,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,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

③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: 법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법 제36조2항에 의거 다른 회사의 주식(지분을 포함)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

④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

제2장 조 직

제6조 (이사)

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두고, 이사겸 단장으로 한다.

제7조 (감사)

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, 감사는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의 감사, 업무집행기관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시행하며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 (단장 등)

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임면방법은 단장과 같다.

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하부조직)

① 산학협력단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연구원 등의 채용)

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의 계약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 또는 겸직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직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위원회)

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 (산학협력협의회)

①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·학·연·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3조 (재산의 종류)

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① 출연재산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,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③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

제14조 (운영재원)

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(前)조의 재산 및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제15조 (재무관리의 제한)

①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
2. 채권의 포기
3.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

②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 (회계연도)

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 칙

제17조 (비밀유지의무)

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.

제19조 (해산)

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.

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.

③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20조 (공고)

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혜전대학교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②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

③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
제21조 (세부사항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특허권 등)

이 정관의 효력발생당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으로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